



韓國에 있어서 印刷카드의 問題點

李 喆 珪

1. 序 言

印刷카드는 各 圖書館에서 行해지고 있는 目錄 및 分類作業에 所要되는 時間의 人的 經濟的 節約을 할수 있게하고 이 時間과 努力을 閱覽 參考 書誌 其他 圖書館業務에 注力할수 있는 利益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 印刷카드는 單位카드(基本카드)에 副出表示 分類番號를 記入한 것을 印刷하여 各 圖書館에 所要枚數를 配付하면 그 圖書館에서는 그 單位카드가 表示하는 副出事項 即 書名 件名 共著者 譯者 分出等의 簡單한 副出記入을 하고 그 圖書館에서 使用하는 分類番號 著者記號(請求番號)를 記入한다음 備置된 目錄體系에 따라 排列하면 된다. 이 印刷카드를 利用하면 各 圖書館마다 分類 및 目錄作業을 할 必要가 없고 그 努力과 時間을 다른 책-비스에 注力할수 있게되어 現代的 圖書館책-비스에 크다란 成果를 건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印刷카드는 오래前부터 美國 國會圖書館을 비롯하여 歐羅巴 各國에서 發達하고 最近에와서 日本 自由中國等 여러나라에서 盛行하고있다. 圖書館이 組織의으로 分類 目錄體系가 同一하면 더욱 이 印刷카드는 活潑하게 活用되는것이요 그만큼 圖書館發展에 큰 貢獻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圖書館業務가 中央集中的으로 資料의 蒐集, 分配, 分類 目錄作業이 行해지는 方向으로 發展될 것이 豫想되고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圖書館界發展을 爲하여 印刷카드의 實現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미 圖書館 關係者들은 이 印刷카드에 對한 構想과 앞날의 計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條件이 具備되어 있지 않아 그實現을 보지 못함을 遺憾으로 生覺하고, 꼭 있어야할 우리나라 印刷카드에 對하여 몇가지 問題點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2. 印刷카드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點

1. 國內出版物納本制

이 出版物納本制는 印刷카드 實現에 있어서 基本的인 條件으로서 法的措置가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 國會圖書館이나 日本 國立國會圖書館의 例를보면 出版物 納本制가 法的으로 定해져있어 印刷카드業務가 國內는 勿論 國際의으로도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出版物 納本制의 法的措置가 되어야만 印刷카드業務가 제대로 遂行되어 全國圖書館에 效率의으로 活用을 期待할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國內出版物이 出版即時 納本되고 이 納本을 받는 圖書館은 迅速正確하게 分類, 目錄作業을 하여

印刷카드를 作成 保管해서 어떠한 圖書館에서 어떠한 圖書에 對한 印刷카드를 要求하더라도 곧 配付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萬若 出版物 納本制가 法的으로 定해져 있지 않다면 印刷카드의 活用은 期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國內出版物을 總網羅할수있는 圖書館에서 이 印刷카드業務를 主管한다하더라도 各其 圖書館의 豫算과 收書計劃에 따라 같은 國內出版物이라 할지라도 購入時期가 一定치 않고 먼저 購入하는 圖書館도 있을것이고 나중에 購入하는 圖書館도 있을것이니 印刷카드業務를 主管하는 圖書館에서 늦게 購入한다면 이미 蒐集한 다른 圖書館에서 印刷카드 配付 要請이 있을때 應하지 못할은 勿論 많은 支障을 招來케되고 이 印刷카드의 作成을 기다려 蒐集된 圖書는 閱覽에 提供을 못하고 그동안 死藏할 수 밖에 없게되니 圖書館의 使命인 必要한 圖書를 必要한 時間에 必要한 場所에 提供할수 없을뿐 아니라 印刷카드의 活用은 到底히 바랄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印刷카드를 効率的으로 利用케 하려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出版物納本制의 法的措置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法的措置가 되어 있지않아 遺憾스러운 일이나 앞으로 圖書館界 發展을 위하여 時急히 要求되는 重要한 問題이다.

그러면 參考로 이 納本制에 對한 法條文을 美國國會圖書館과 日本國立國會圖書館法에서 簡略하게 들어 보기로 하겠다.

美國國會圖書館關係法規(聯邦法典 第二編)

第131條 國會圖書館을 構成하는 蒐集藏書

“國會圖書館은 1873年12月1日現在 法律上 容認된 權限에 依據하여 蒐集되어 있는 書籍 地圖 및 그밖에 刊行物과 購買, 交換, 寄贈, 國會가 注文한 刊行物의 保管 版權保存을 爲한 寄託 또는 其他的 節次에 依하여 隨時로 追加된것들을 圖書館建物內에 保藏한다”

위 條文에서 “版權保存을 爲한 寄託”이란 文句가 即 美國國會圖書館에서 行하고 있는 出版物登錄(出版)事務를 爲하여 寄託하는 것으로 이것이 上述한 納本制를 말하는 것이다.

日本國立國會圖書館法

昭和23年 2月 9日 法律第 5 號
改正 昭和24年 6月 6日 法律第194號
昭和30年 1月28日 法律第 3 號

第10章 國 地方公共團體等이 發行하는 出版物의 納入

第24條 1項 國家機關에서 또는 國의 諸機關을 爲하여 發行된 出版物로서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出版物(機密取扱의 것 및 書式 其他簡易한 것을 除外한다. 以下同)이 發行되었을때 當該機關은 公用 및 外國政府 出版物과의 國際的 交換用 또는 其他的 國際的 交換用に 提供하기 爲하여 其發行部數가 500部 以上일때에는 30部, 500部 未滿일때에는 館長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30部未滿의 部數를 直時 國立國會圖書館에 納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但 館長은 發行部數가 500部 以上の 境遇에 있어서 特別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30部 以上 50部 以下の 部數의 納入을 要求할수 있으며 또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30部 未滿의 部數를 納入케 할수 있다.

- (1) 圖書
- (2) 小冊子

- (3) 逐次刊行物
- (4) 樂譜
- (5) 地圖
- (6) 映畫技術로서 製作한 著作物
- (7) 錄音盤 其他 音聲 機械的으로 複製하는데에 提供하는 機械로 寫調한 著作物
- (8) 前各號에 揭記한것 外的 印刷術 其他的 機械的 또는 化學的 方法으로 文書 또는 圖畫로서 複製한 著作物

同第24條 2項 1~2에서는 都, 道, 府, 縣 또는 이에準하는 地方自治團體, 市(特別 區包含)町, 村 또는 이에準하는 諸機關에서 出版物이 發行되었을때에 納入한다는 것을 規定하였고.

第11章 第25條 1項 1~4에서는 其他的 者가 發行하는 出版物의 納入을 規定하고 同條2項의 1에서는 發行者가 正當한 理由 없이 出版物의 納入을 하지 않을경우 그 出版物의 5배에 相當하는 金額以下의 過料에 處한다고 規定하였다.

Ⅰ. 印刷카—드作成 對象(出版物)範圍

印刷카—드 作成對象(出版物)範圍를 말하기 前에 우리나라 圖書館에 있어서 藏書構成의 現在와 未來를 살펴보면 中高等 學校圖書館이나 最近 新設圖書館을 除外하고는 既成圖書館으로서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이 거의다 國內出版은 勿論 日書 西書を 收藏하고 있고 그 比率을 본다면 國內出版物 보다는 오히려 日書 西書가 더 많은 程度이다. 外國圖書館의 例를 본다면 特定한 國家나 또는 地域에 關하여 研究하는 機關에 附設되어 있는 圖書館에서도 우리나라 圖書館에서 보는바와 같은 그러한 藏書의 比率은 不

수 없다. 그것은 勿論 自己나라 出版物만 購入하려해도 大端히 數量이 많고 莫大한 豫算이 必要하기 때문일것이다. 外國出版物이 있다고하면 꼭 필요한 參考圖書 程度나 國際交換을 通하여 收受된 圖書밖에 是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出版物이 貧弱한데다가 日政을 거쳐 또 解放後 外國의 文化를 輸入함에따라 西書가 많이 들어왔고 一般的으로 우리 國民이 語學面으로보아 日本語는 勿論 英語等 外國語를 理解할 수 있는 關係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出版物 보다는 日書나 西書가 더 많은 形便이다. 이려고 보면 未來에 있어서 藏書構成의 比率은 現在 보다는 國內出版物이 多量 增加될것은 豫想되나 決코 日書나 西書의 量도 無視못할 比率을 차지 할 것이다. 現在 各圖書館의 豫算을 보면 5,000,000환 以上の 圖書館이 數十個館이된다. 이 圖書館들은 勿論 그性格과 收書計劃에따라 다르겠지만 日書 西書購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不得已한 것이기때문에 印刷카—드 作成範圍를 定하는데 그 對象 出版物이 問題가 되는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에서 印刷카—드를 實施함에 있어서 그對象 出版物을 어떻게 定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그렇다고해서 國內出版物 日書 西書を 다같이 印刷카—드를 作成한다는는 여러가지 條件으로 할수없고 不得已 우리나라 出版物에 限하여 實施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日書나 西書を 多量갖게되는 圖書館에서는 國內出版物만 除外하고는 目錄및 分類作業을 하지않으면 안되게된다. 그러고 보면 時間的 人的 努力을 節約하고 다른

圖書館紙-비드에 注力할 수있는 印刷카-드의 본뜻에 맞지 아니하며 不合理한바 있지만 우리나라 實情으로보아 不得已한 것이다. 그러나 外國圖書를 많이 蒐集하는 圖書館으로서의 副出表示와 自己 圖書館에서 使用하는 分類番號(請求番號)를 記入한 單位카-드(基本카-드)1枚만 作成하여 印刷카-드를 主管하는 圖書館에 依託할수 있을것이다. 이리코보면 每冊에 對하여 所要枚數를 作成하는 時間的 節約은 될 것이니 다른 業務에 注力할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出版物이 大部分이면 別問題가 없을것이고 印刷카-드도 効率的으로 利用될것이나 우리나라 圖書館의 藏書構成이 위에서 말한바 같은 實情이니 實際問題에 있어 印刷카-드活用に 그 對象範圍(出版物)가 困難한 問題點이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二. 豫算

모-든 條件이 具備하여도 豫算의 뒷받침이 없으면 印刷카-드의 實現이 不可能하다는것은 말할必要도 없다. 앞으로 納本制의 法的措置가 되면 納本을 받는 圖書館에서 實施하여야할 問題이므로 國內出版物에 限하여 대충 그 豫算을 따져보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 豫算案中 給與에 있어서는 筆者의 私案이며 어떠한 現行 給與規定에 依하지 않은것을 밝히둔다.

全國圖書館數(中高校圖書館除外)

133個館

年間國內出版種數(定刊書除外)

約 2 000種

1種에 對한 平均所要枚數(印刷카-드)

6 枚

(一) 카-드購入費

$2,000種 \times 6枚 \times 133個館 = 1,596,000枚$

$1,596,000枚 \times 7韓 = 11,172,000韓$

(二) 給與

(1) 印刷工 1人 $60,000韓 \times 12月$
 $= 720,000韓$

(2) 同助手 1人 $40,000韓 \times 12月$
 $= 480,000韓$

(3) 事務職員(카-드配付, 連絡等 事務擔當)

但 事務職員은 現庶務係職員이나 經理係職員이 擔當할수도 있음.

2人 $50,000韓 \times 2人 \times 12月$
 $= 1,200,000韓$

(三) 通信費

(1) 郵便料

普通 40韓 $\times 133個館 \times 3回(月)$
 $= 191,520韓$

(2) 印刷카-드送料

國內四種 40韓 $\times 133個館 \times 3回(月) \times$
 $12月 = 191,520韓$

(3) 包裝用封套 20韓 $\times 133個館 \times$
 $3回(月) \times 12月 = 95,760韓$

(四) 施設費

(1) 印刷機(名啣版)中型 1臺 $100,000韓$

(2) 活字 $600,000韓$

(3) 馬木, 組版臺, 文選箱等 $200,000韓$

(4) 카-드保管函 其他雜費 $500,000韓$

合計 $15,450,800韓$

위에 計上된것은 133個館 國內全圖書館(中高校圖書館除外)이 年間 國內出版物約2,000種을 購入하는것으로 보고 計算하였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各圖書館 豫算事情과 收書計劃에 따라 國內出版物 全部를 購入할수있는 充分한 豫算이 있는 數十個館을 除外하고는 그 性質에 따라 部分的으로 收書分野가 다름으로 카-드購入費와 通信費는 그半數인 約70個圖書館 以下の程度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카-드購入費와 通信費의 半額을 除外한

約9,600,000환 程度로 그豫算을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豫算에서 施設費를 除外하고 年間必覡한 豫算額은 約8,200,000환에다 年間雜費 約500,000환 程度를 加한 約 8,700,000환 程度이다.

이豫算을 받게되고 印刷카드가 實施되던 各圖書館에서 行하고있는 分類, 目錄作業에 從事하는 職員의 半數만 가지고도 能히 擔當할수 있으며 나머지 人員과 努力을 다른 圖書館業務에 專力할수있게 됨으로 그만큼 圖書館發展에 많은 貢獻을 할수있는 것이다.

國會圖書館 印刷카드에 對하여

印刷카드 役割의 重要性和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 國會圖書館에서는 4291年初에 製本印刷室을 附設

(國會圖書館 印刷카드)

하고 同年9월부터 印刷카드를 만들기 始作하였다. 아직 그施設은 不足하나마 國會圖書館藏書中 東洋(國內出版物, 日書, 中國書等)에 對하여 所覡의 枚數를 印刷하여 國會圖書館에서 自給自足할수 있는 實情이며 아직 他圖書館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

實은 現在도 國內 여러 圖書館에서도 配付 또는 販賣依賴가 있으나 上述한 몇 가지 問題點인 國內出版物納本制의 法的 措置라든가 施設費와 給與(人件費)를 除外한 카드購入費, 通信費 등의 豫算이 設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印刷카드가 全國의으로 活用할수 있도록 方策을 세워 推進할 計劃이다.

330.1

崔 虎 鎭

現代의經濟學 崔虎鎭 朴東浩 共著

서울 東國文化社 4289

186p 21cm

1. 330.1 I. 朴東浩 共著 II. 書名

國會圖書館

4. 結 言

印刷카드는 圖書館事業에 있어서 여러 가지 長點과 많은 利益을 가져온것이기 때문에 其實現함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點

을 들러본것이다. 美國 國會圖書館의 印刷카드는 國際의으로 廣汎하게 利用되고 있어 各國圖書館事業에 많은 便宜를 提供하고 있거니와 이제 우리나라 圖書館界도

日其數의 增加를 볼수있고 또 發展하여 가고 있는데 對하여 印刷카이드도 當然히 만드려져 우리나라 圖書館事業이 活潑한 姿-비스를 爲하여 나타나는 緊要한 問題라고 할것이다.

現代 圖書館의 姿-비스는 單只 其圖書館自體에서 그치는것이 아니고 社會教育 機關으로서 文化奉仕機關으로서 社會의

重要한 位置를 찾아하고 있는것이며 教育面 社會面에 크다란 影響을 미칠뿐만 아니라 國際的 文物交換의 中心이 되기도 한것이다. 이 重要한 役割을하는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을 爲하여 이 印刷카이드의 實現을 各圖書館에서는 勿論 期待하고 있거니와 當局에서도 積極 推進있기를 要望하는 바이다. (筆者 國會圖書館 幹事)

會 員 入 會 案 內

아직 入會하지않은 圖書館이나 圖書館職員은 부디 入會하시기 바랍니다

1. 普 通 會 員

圖書館 또는 讀書施設에 勤務하시는 분은 누구나 本協會에 普通會員으로 加入하실 수 있습니다. (用紙는 請求하시면 보내드립니다)

會費: 年 1,000圓 (郵票도 可)

2. 贊 助 會 員

누구시든지 本協會 趣旨에 贊同하시는 분은 贊助會員이 될수 있습니다.

會費: 年 10,000圓以上

◎ 普通會員 또는 贊助會員에게는 本協會 機關誌「圖協月報」를 無料進呈

3. 特 別 會 員

圖書館(室)에서는 該當 會費를 添付申請하시면 會員이 됩니다.

會 費

A級 年 50,000圓 (綜合大學圖書館. 國立. 國會. 其他 該當 圖書館)

B級 年 30,000圓 (單科大學圖書館. 軍機關圖書館. 道立 其他該當圖書館)

C級 年 20,000圓 (市. 道立圖書館. 初級大學圖書館. 其他該當圖書館)

D級 年 10,000圓 (都市學校圖書館 其他小圖書館)

E級 年 5,000圓 (農村學校圖書館)